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45호 2022. 10. 14.(금)

##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744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고성군 조례 제2745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고성군 조례 제2746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고성군 조례 제2747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고성군 조례 제2748호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7

고성군 조례 제2749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고성군 조례 제2750호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 27

고성군 조례 제2751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고성군 조례 제2752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고성군 조례 제2753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규 칙

고성군 규칙 제1248호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40

고성군 규칙 제1249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

고성군 규칙 제1250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6

고성군 규칙 제1251호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66

회 람									
--------	--	--	--	--	--	--	--	--	--

##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608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6
고성군 공고 제2022-1612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86

## 공 고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22-16호 상족암군립공원 계획 (공원시설: 교통·운수시설) 변경 예고 공고 .....	98
--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44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계속해서 군에 주소(주민등록 거주지)”를 “계속하여 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외 거주자”를 “관외거주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내 거주자”를 “관내거주자”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사용료를 사용신고 시 미리”를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등)”을 “(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사망자가 다음”으로, “사람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정리 주민(주민등록 거주자)”을 “법정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이 경우 관내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군 화장장이 시설공사 등으로 가동할 수 없어 고성군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용료는 고성군민이 별표 2에 따른 관내사용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관외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9조의2(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협약”을 “계약”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45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확대 및”을 “청소년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1. 명칭: 고성동부청소년센터
- 2. 위치: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44번길 26-5(고성동부도서관 1층)

제4조제3호 중 “다목적홀, 정보자료실,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비디오감상실”을 “실내집회장, 프로그램실(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동장)”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청소년지도사 1명”을 “운영 및 제3조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운영대표자와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운영대표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청소년문화의집 자체행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 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2. 매주 월요일
- 3.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중 “감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를 “감염병환자” 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별표] < 개정 2022. 10. 14.>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료(제11조관련)

시설명	사용내역	사용료		비고
		청소년	일반	
실내집회장	○ 영상장비, 음향장비 사용 ○ 전시, 공연, 기타행사 (1회 2시간)	10,000 원	20,000 원	※ 초과사용시 시간당 기본 사용료의 50% 가산징수
	○ 냉·난방시설 (1회 2시간)	10,000 원	20,000 원	
프로그램실 (자치활동실, 특성화수련활 동장)	○ 1회 2시간	10,000 원	20,000 원	

※ 청소년문화의집 자체 프로그램(청소년문화교실, 특강교실, 월별수련관 행사, 동아리활동, 사회교육, 체육활동 등) 및 청소년활동(문화활동, 교류활동, 수련활동) 운영을 위한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46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 6. “일상복구입비”란 학생의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교복구입비의 지원)”을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2.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3.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4.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복구입비”를 각각 “교복구입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 등을”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해당 학교의 장”을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의 장”을 “관할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 및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 등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14.>

<b>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b> (제6조제1항 관련)				
<input type="checkbox"/> 신청 시·군 : 고성군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input type="checkbox"/>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학교명	(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입)학생만 기재	전학일	년 월 일	이전 학교명	( ) 학교( 시도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원칙(관외학교, 대안교육기관 제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input type="checkbox"/>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 금액	원(기관 : )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경남도내학교 : ① 학생 주민등록표 초본, ②통장 사본 ·타시·군 학교 : ①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② 학칙, ③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①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공통(②~ ③) ④ 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b>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b>				
본 기관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b>5년</b>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b>5년</b>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10. 14.>

<b>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서</b> (제6조제1항 관련)				
<input type="checkbox"/> 신청 시·군 :		* 학생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input type="checkbox"/>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학교명	( ) 학교 1학년 반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주민등록주소 (도로명)				
전입학생만 기 재	전학일	년 월 일	이 전 학교명	( ) 학교( 시도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input type="checkbox"/> 교복(일상복) 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반드시 "○" 표시) ※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일상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일상복)지원금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았음 (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 금액	원(기관 : )	
위와 같이 일상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경남도내학교 : ① 학생 주민등록표 초본 ②일상복(의류) 구입 영수증 ③통장 사본 ·타시군 학교 : ① 학생 주민등록표 초본, ②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③의류 구입 영수증 ④통장사본 ·대안교육기관 : ① 학생 주민등록표 초본, ②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입학일, 학년 등 표기), ③의류 구입 영수증 ④통장사본 ⑤교육과정 관련서류(교과운영, 수업시간표 등)			
<b>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b>				
본 기관은 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 포함), 학적사항, 스쿨뱅킹계좌, 전입생(전학일, 이전학교명)	일상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b>5년</b>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일상복구입비 지원 자격 확인	<b>5년</b>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상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14.>

## 교복구입비 등 지원 검토 조서(제6조제2항)

연번	학생 인적사항				스쿨뱅킹 계좌 확인 필 (부모 또는 보호자 계좌)*			중복 수혜 여부	학적*	비고** (전입학 일자)
	학교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학적: 신입(학), 전입(학), 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복학

\*\*비고: 학적 상 전입학인 경우 전입학 일자 기재

확인자 : ○○ 읍·면장 / ○○○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47호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을 “다양한 영상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고성군민의” 로, “고성군 작은영화관” 을 “설치한 고성군 작은영화관” 으로 한다.

제2조 중 “작은 영화관” 을 “작은영화관” 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제5조의 제목 “(관람료)” 를 “(관람료 등)” 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또는 주차요금 징수시간 이후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날 주차요금 징수시간 전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제7조제2항 중 “협약” 을 “계약”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신설 2022. 10. 14.>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5조제4항 관련)**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 (최대금액)
영화 관람시	영화 미관람시	
최초 3시간 무료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	최초 1시간 무료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	4,000원

**비고**

1. 유료운영시간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00 ~ 22:00 까지

2. 요금징수방법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온 후 주차관제시스템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 1일 주차요금 최대금액은 4,000원으로 한다.

3.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차량 방치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 한다.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 부담)

4.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 주차장 출입 자동차는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주차된 자동차 내에 현금이나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거부사항

-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 그 밖에 군 행사 등을 위해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고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2] <신설 2022. 10. 14.>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감면대상(제5조제5항 관련)**

감면범위	감 면 대 상	비 고
<p>1. 주차요금 전액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권을 발행받은 시간부터 1시간 이내 자동차</li> <li>○ 공적 용무로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중 주차권에 방문부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li> <li>○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li> <li>○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li> <li>○ 국가유공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li> </ul>	
<p>2.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li> <li>○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40시간 이상인 자로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차량</li> <li>○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li> </ul>	

**비고**

주차요금을 면제·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적용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48호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고성군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호	상담 치료·연계	
의료비	제5조제2호	연 20만원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3호	1시간 범위 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가능(최대 4시간)
법률상담	제5조제4호	상담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4호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5조제7호	예산의 범위 내	

■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고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49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기록”을 “기록하고”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탄재, 거리청소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2

2. 대형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별표 3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이 필요하거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가. 지게차, 암롤차량 등 처리장 내 운용차량과 노면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 다. 골목길 등 문전수거지에서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는 경우
-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 마.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불편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작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호 중 “쓰레기종량제 봉투” 를 “쓰레기종량제봉투” 로, “배출하여야 한다” 를 “배출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타지 않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불연성봉투(마대)(이하 “마대” 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호 본문 중 “배출하여야 한다” 를 “배출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징수한다.” 를 “징수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2 중 “하여야 한다.” 를 “할 것”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배출하여야 한다.” 를 각각 “배출 할 것”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사용봉투” 를 “재사용봉투, 마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 옅은 노란색(다만, 10리터와 20리터 용량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2. 공공용봉투: 옅은 흰색
3. 마대: 녹색

제11조제1항 전단 중 “판매소” 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업체, 판매자” 를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 · 판매자”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를 “판매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종량제봉투의” 를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로, “종량제봉투 판매업” 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를 “판매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급받을 수 없다.” 를 “공급받지 않을 것”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를 “쓰레기종량제봉투 미판매금지”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를 “시 이에 응할 것”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준수하여야 한다.” 를 “준수 할 것”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규격봉투” 를 “쓰레기종량제봉투”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규격” 을 “쓰레기종량제봉투 규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규격봉투” 를 “쓰레기종량제봉투” 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봉투판매소” 를 “판매소”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봉투” 를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로 한다.

제14조의2 중 “종량제봉투” 를 “쓰레기종량제봉투” 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일반용봉투 공급가격·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2022. 10. 14.>

###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단위 : 원)

용량	일반용봉투가격		
	공 급 가 격	판매수수료	판 매 가 격
5 ℓ	91	9	100
10 ℓ	182	18	200
20 ℓ	364	36	400
30 ℓ	546	54	600
50 ℓ	910	90	1,000
75 ℓ	1,365	135	1,500
용량	불연성봉투가격		
	공 급 가 격	판매수수료	판 매 가 격
10 ℓ	273	27	300
20 ℓ	546	54	600

■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4] <2022. 10. 14.>

### 쓰레기종량제봉투 종류 및 규격

봉투용량	용 도	비 고
5 l	일반용	
10 l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마대)	
20 l	일반용, 재사용, 불연성(마대)	
30 l	일반용, 재사용	
50 l	일반용, 공공용	
75 l	일반용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50호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고성군 건축 조례」 제3조의6에 따른 고성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전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철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해당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3. 빈 건축물 정비
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51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를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로 한다.

제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시설사용료” 라 함은 박물관 내에 설치된 시설(주차장, 로프어드벤처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0월까지 :” 를 “10월까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월까지 :” 를 “2월까지:”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람료)” 를 “(관람료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차장” 을 “박물관 내 시설” 로, “주차료” 를 “시설사용료”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람료 등의 감면)” 을 “(관람료의 감면)”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람료 등을”을 “관람료를”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1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손·훼손·망실한”을 “과손·훼손·분실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망실”을 각각 “분실”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열람신청서”를 “열람허가신청서”로 한

다.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로프어드벤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2. 10. 14.>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관람료			비 고
	어린이	청소년, 군 인	어 른	
개 인	1,500	2,000	3,000	-
단 체 (30명 이상)	1,000	1,500	2,500	-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
고성군민	500	500	1,000	-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

※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 주차료

(단위 : 원)

구 분	주차료		비 고
	일 반	경차, 저공해차량, 장애인 탑승차량	
소 형	2,000	1,000	
대 형	3,000	1,500	소형 외 모든차종

※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 로프어드벤처

(단위 : 원)

구 분	요금		비 고
	개인	단체 (30명 이상)	
오니 코스	3,000	2,000	※ 사용연령: 만 7세 ~ 만 12세
고니 코스	2,000	1,500	※ 사용연령: 만 3세 ~ 만 6세



## 소장품 대여 승인 조건

1. 소장품 대여에 따른 제반사항은 아래 대여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2. 대여품은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독,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고성공룡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3. 대여 받은 기관은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시 대여품의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품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때에는 군에 즉시 알리고 문서와 사진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손상된 대여품은 우리 관의 허가 없이는 운송할 수 없으며 만약 운송 시 손상이 생겼을 경우 조사를 위해 사용한 포장 재료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5. 대여 받은 기관이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대여품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군의 요구에 따라 통보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분실, 손상, 기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대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전시와 관련된 간행물 또는 누리집 등의 제작을 위하여 대여품을 촬영하거나 디지털데이터를 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품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원판 필름 또는 디지털데이터 각 1부를 군에 제공해야 합니다.
8. 사진 게재 시에는 반드시 고성공룡박물관 소장임을 표기해야 하고, 대여 협의에 따른 일정 수량의 간행물을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재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군에 있습니다.
9. 위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군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보완시설(CCTV, 설치, 방호 관련 근무자 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미비, 대여품 관리를 위한 시설 미비 등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여품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를 취소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0. 14.>

열람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성별	남/여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명칭			수량	비고		
열람일시	년 월 일						
열람인원	본인 외(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	연번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1		남/여			
		2		남/여			
		3		남/여			
열람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논문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연구자료 <input type="checkbox"/> 기타( )						
<p>귀 박물관 소장품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 귀 박물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고성군수 귀하</p>							
구비서류	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 전시소장품 열람 조건

1. 허가 대상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 할 때
-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재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자

2. 제한 대상

-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 시 관리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할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품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열람 시 준수사항

- 열람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열람 중 소장품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해야 한다.
- 기타 고성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52호

###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0,000제곱미터 미만”을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753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준대규모 점포” 를 “준대규모점포” 로 한다.

제26조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2년간)” 을 “2024년 12월 31일까지(4년간)”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2. 10. 14. >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 1 가맹점정보 (전산등록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장:	핸드폰:	
대 표 자 명	(남, 여)		

## 2. 계좌정보

은 행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 3. 단말기정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매장 내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꼭 기재해 주세요)

## 4. 결제방식(모두 신청 가능)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카드 , <input type="checkbox"/> 쿼알코드
---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 하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규칙 제1248호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성군수를 피고 및 당사자”를 “고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수행절차,소송비용지급,기타”를 “수행절차, 소송비용지급, 기타”로 한다.

제2조 중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를 피고 및 당사자”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고성군수와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을 “소송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조사·분석·연구”를 “조사, 분석,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 사건”을 “소송사건”으로, “감안하여 당해”를 “고려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송담당관은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지도,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서” 를 “소송수행자지정서” 로,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를 “교부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6-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7호서식)
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8호서식), 별도 약정 체결
4.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9호서식)

제11조 중 “소송비용 등” 을 “소송비용등” 으로, “의해” 를 “따라” 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  
 른」(이하 “국가소송법” 이라 한다) 및 국가소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소송 관련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을 “준비서면,  
 서면증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다음” 을 “다음” 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새로이” 를 “새  
 로”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군수” 를 “고성군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제14조(중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작성, 시행” 을 “작성·시행” 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접수” 를 “접수하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 를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  
 부” 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군이” 를 “군 또는 행정청이” 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 를 “고성군수” 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군의” 를 “군 또는 행정청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군이” 를 “군 또는 행정청이” 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종전의 제22조) 중 “제출 하는” 을 “제출하는” 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담당관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제4장 행정심판” 을 삭제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0조로 하며,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담당관은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27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군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까지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군 또는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군 또는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고성군수가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함)

제28조(중전의 제26조) 제2항 단서 중 “원인 행위제공자”를 “원인행위 제공자”로, “아니하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원인행위자가 상금”을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으로, “기타사유”를 “기타 사유”로 한다.

제29조(중전의 제27조)제1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27”을 “규칙 제36”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를 “60퍼센트”로, “지급할”을 “지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성군포상 조례」에 의하여”를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4장 행정심판”을 삽입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1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개정 2022. 10. 14.>

[별지 제5호서식] 삭 제<개정 2022. 10. 14.>

[별지 제6-1호서식] 삭 제<개정 2022. 10. 14.>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 1.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10. 14.>

<h2 style="margin: 0;">소 송 위 임 장</h2>	
사 건	
당사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_____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모든 소송행위와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수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 사건에 관한 소의 제기 및 일체의 소송행위</li> <li>1. 반소의 제기 및 응소</li> <li>1.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참가에 의한 탈퇴</li> <li>1.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li> <li>1. 복대리인 선임</li> <li>1. 목적물의 수령</li> <li>1.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li> <li>1. 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li> </ul>	
위임인	20 .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b>고 성 군 수</b>
<b>업무담당변호사지정서</b> _____ 변호사를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함. 20 . . . . <b>법원 귀중</b>	

■ 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2. 10. 14.>

###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담당재판부:           ]

사        건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 다음 -

####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나.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다. 신청이유(해당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2. 위임 사항

- 가.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
- 나. 변제의 영수
- 다. 반소의 제기
- 라.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바. 대리인의 선임
- 사.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첨부서류

- 1. 재직증명서 1통

20 . . . .

신청인 및 위임인 원고 또는 피고 고성군  
연락처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2.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  
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과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  
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규칙 제1249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외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
-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3. 화장증명서
-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

연 번	사망자							신청인					화장 비용 (천원)	지원 금액 (천원)	지급 은행	계좌 번호	비 고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사망 일자	화장 일자	화장 시설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관계	전화번호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규칙 제1250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칭한다)”을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봉사자 :”를 “전문봉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봉사자 :”를 “일반봉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기록날인 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 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용시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1. 평일: 10:00 ~ 21:00

2. 토·일요일: 09:00 ~ 18:00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2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성교육청” 을 “고성교육지원청” 으로, “초,중,고등학교장” 을 “초·중·고등학교장” 으로 한다.

제8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2조에 따라” 로,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를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3조에 따라” 로, “승인 한다” 를 “승인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사용자로 부터” 를 “사용자로부터” 로 한다.

제10조 중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로, “망실하였” 을 “분실하였” 으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7조제2항에 따라” 로, “위촉위원” 을 “위촉직 위원” 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설 운영대표자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대표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2.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시설종사자

5.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종사자 중에서 운영대표자 또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13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8조에 따라”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공고하여야” 를 “공고해야”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8조에 따라”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 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당해신청인” 을 “해당신청인” 으로, “통

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에게” 를 “단체에” 로 한다.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5조에 따른” 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를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갱신신청” 을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 으로, “통지하여야” 를 “통지해야” 로 한다.

제17조 중 “조례 제18조의3” 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으로, “취소예정일” 을 “취소 예정일” 로,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를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삭제 < 2022. 10. 14.>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14.>

###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계약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형성을 위하여 설치된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를 "위탁자" 로 ○○청소년단체를 "수탁자" 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①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수탁자" 는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는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수탁자"는 계약 체결후 2개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지균형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 는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분실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을 "위탁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확보)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군 지원금과 "수탁자"의 자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수탁자"가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제8조(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위탁자"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목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제반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손해배상  
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본 청소년문화의집의 공식명칭은 고성동부청소년센터로 하고 "수탁  
자" 가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  
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등)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 월      ○○일

"위탁자"      고    성    군    수      ○○○ (인)

"수탁자"      ○ ○ ○ ○    대표자      ○○○(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0. 14.>

###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신청서

신 청 자	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	(남/여)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현황	법인설립일	년	월	일
	청소년지도사	1급( 명), 2급( 명), 3급( 명), 기타( 명)		
	자 산	총자산 :	동 산 :	부동산 :
운 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고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4. 최근 3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
5.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2년 10월 14일

고성군 규칙 제1251호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제3호 중 “속된 기관의”를 “소속된 기관의”로,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 기관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제4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서식·제7호서식·제8호서식·제9호서식·제1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4조 및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3호서식] 삭 제<2022. 10. 14.>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4호서식] 삭 제<2022. 10. 14.>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5호서식] 삭 제<2022. 10. 14.>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6호서식] 삭제<2022. 10. 14.>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7호서식] 삭 제<2022. 10. 14.>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2. 10. 14.>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9호서식] 삭 제<2022. 10. 14.>

■ 고성군 공무원행동강령 규칙[별지 제19호서식] 삭 제<2022. 10. 14.>

고성군 공고 제2022-1608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4.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 명칭 변경(안 제2조)
- 나.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후생단체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112,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 [전화: (055)670-211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을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으로,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을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 별표 3의2의 지급 구분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한 수당에 대한 소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대통령령 제3217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가목1)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현행)

##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와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3] (개정)<2022.00.00.>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와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별표 3의2\]](#) (신설)<2022.00.00.>

##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제4호와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 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 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에서 지방공무원----- ----- ----- ----- ---</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 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 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 「의료법」 제2 조제2항 및 「수의사법」 제2조제1 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p>
<p>1. 2. (생 략) 3. <u>보건진료직렬공무원</u> : 별표 3의 지 급구분표 <u>&lt;신 설&gt;</u></p>	<p>1. 2. (현행과 같음) 3. <u>보건진료 전담공무원</u> ----- ----- 4. <u>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 자)</u>: 별표 3의2의 지급 구분표</p>

**붙 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각 조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재정 수반요인 있음.
- 비용 산출근거(2023년 지급 기준)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52,000,000원
    - ① 2023년 지급분: 250,000원×12명×12월 = 36,000,000원
    - ② 2021~2022년 소급지급분: 200,000원×4명×20월 = 16,000,000원
  - 수의직렬공무원: 500,000원×1명×12월= 6,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4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1. 7.]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개정 2022. 1. 4.>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등의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1)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

	<p>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제외한다.</p> <p>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p> <p>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p> <p>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p> <p>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p> <p>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p>	<p>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p>
	<p>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p>	<p>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612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4.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2023년 유료 운영 예정인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 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우 52943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전화: 055-670-2332, FAX: 055-670-25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 공영차고지 “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을 신청하고 이용권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위치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1029번지에 둔다.

제4조(관리의 위탁)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4.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②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 공영차고지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 신청) ① 공영차고지 이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군수에게 공용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가 연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10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 금지
4.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위탁자와 수탁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별표 1]

## 차고지 이용요금표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정 기 권		시 간 요 금	
	연	월	단 위	금 액
승용차, 1.5톤 미만 화물자동차	240,000원	20,000원	2시간 이하	무 료
			12시간 이하	1,000원
			24시간 이하	2,000원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480,000원	40,000원	2시간 이하	무 료
			12시간 이하	2,000원
			24시간 이하	4,000원

**비고**

1.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화물자동차의 일시적 주차나 휴게시설을 이용(2시간 이내)하기 위한 주차료는 면제
3.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 차량(1대)은 무료로 한다.
4. 입차 후 24시간 이후는 1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휴게시설(샤워실, 수면실, 휴게실)은 무료 이용 가능함.

■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차량현황	차량번호		최대적재량		
	차 종		세부용도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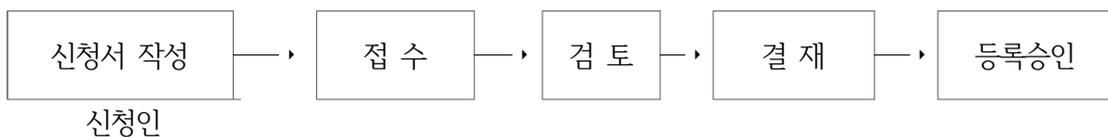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처리 절차



■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

고성군 제 호

# 차고지 이용증명서

- 성 명(법인) :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고성군 화물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환불계좌 (예금주)		

차량현황	차량번호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내역	이용료 납부액	정산액	환 불 청구액
	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자동차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가. 관련 조문: 안 제4조(관리운영)
- 나. 비용발생 요인: 공영차고지를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
- 다. 소요예산: 63,000천 원(연간)
  - (인건비) 26,500천 원\*기간제 2명 = 53,000천 원
  -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요금 등 = 5,000천 원
  - (시설유지비) 차선도색, 시설물 보수 등 = 5,000천 원
- ※ 연간 세입예산: 47,860천 원(이용요금 46,560천 원, 임대료 1,300천 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의 제정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운영비용은 연간 63,000천 원으로 예상되며, 수반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정 강 호**

<b>참고</b>	<b>상위 및 관계법령(발췌)</b>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22-16호

**상족암군립공원 계획(공원시설: 교통·운수시설) 변경 예고공고**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족암군립공원 계획(공원시설:교통·운수시설)변경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2.

고 성 군 수

-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상족암군립공원(자연공원)
- 2. 공원구역 : 5.095km<sup>2</sup>(변경없음)
- 3. 용도지구 : 변경없음
- 4. 대상시설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 지정 : 76,927m<sup>2</sup>
  - 변경 : 76,441m<sup>2</sup>(감486m<sup>2</sup>)
 기 결정된 공원시설(교통·운수시설) 중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경미한 변경
- 5. 관계도서 :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비치
- 6. 의견제출
  - 상족암군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055-670-44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서

건 명	상족암군립공원 계획(공원시설:교통·운수시설) 변경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족암군립공원 계획(공원  
시설:교통·운수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

「자연공원법」 제1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지역 상족암군립공원 계획(공원  
시설:문화시설)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